

# 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9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0- <i>mk</i>	시행장 특별취급	시 장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	
시행일자	89. 6. 8		
보조 기 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	협 조 기 관	문 서 통 계
	시설계획과장		
	가로계획과장		
기안책임자	나 성 수	법무담당관 협조통계관 <i>김정과</i>	발 송 인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장	발 송 인
제 목	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설정		
(제1안) : 내부결재			
1. 관재01251-469('89.5.9)의 관련입니다.			
2. 위 대호로 길의 받은 강동구 전호동 298-4(대지:66.6m <sup>2</sup> )의			
체비지매각에 대하여 검토한바, 본 토지는 폭원20미터도로와 15미터도로의 교차점에			
예각으로 위치하는 체비지이므로,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			
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(가각선제)하여 체비지 관리 및			
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.			
첨부 : 일건서류. 끝.			
(제2안)		4244	

수신	: 건설부장관
참조	: 도시시설계획과장
제목	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성 보고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하였기	
보고 합니다.	
첨부	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(제3안)	
수신	: 총무처장관
제목	: 관보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	
가. 구분	: 고시
나. 게재건명	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
다. 법적근거	: 도시계획법 제12조.
타. 게재내용	: 별첨 고시문.
첨부	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(제4안)	
수신	: 강동구청장
참조	: 도시성비과장

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이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

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도로과장.



고

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  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


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 
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,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 
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면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 
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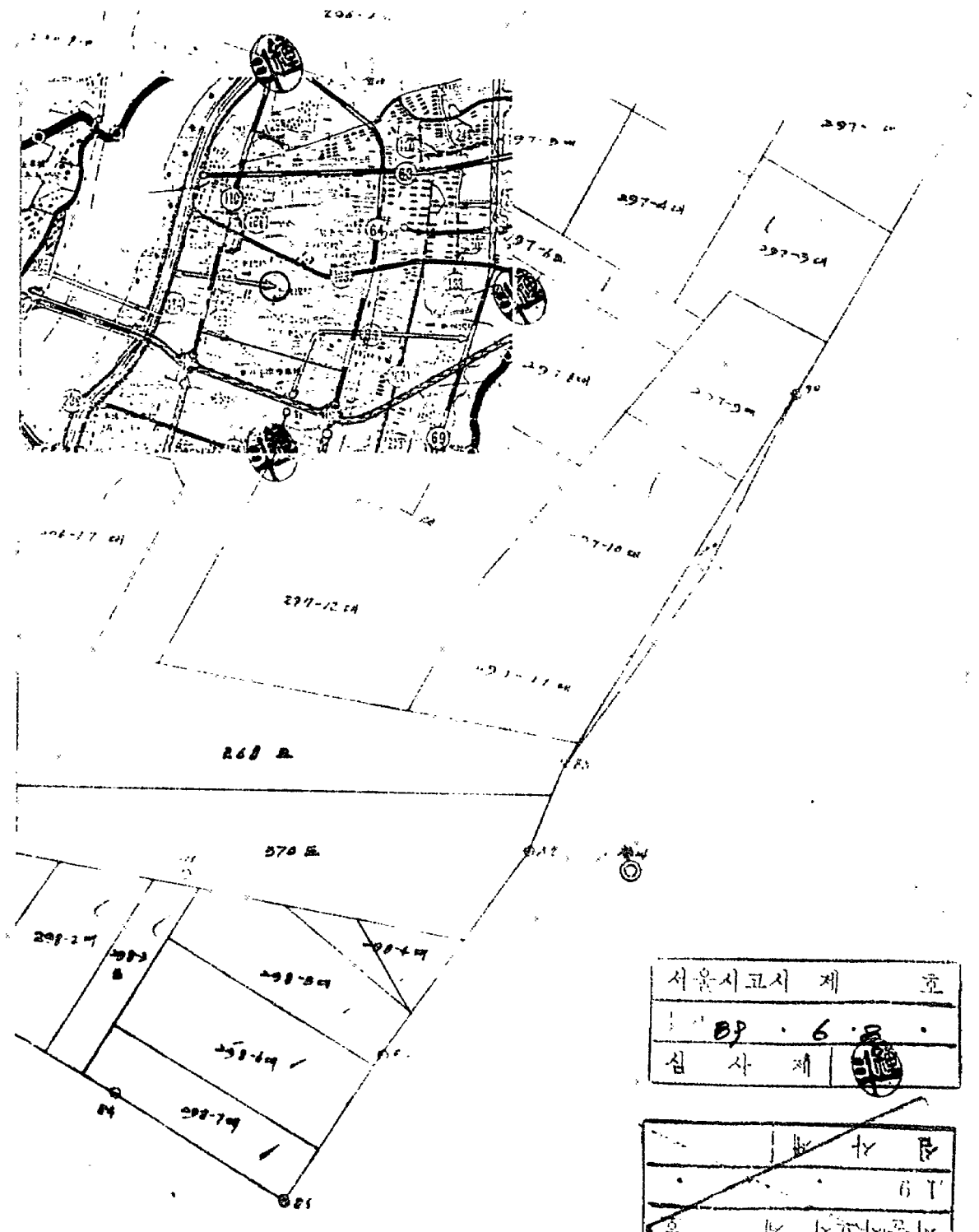
1989. 6.
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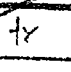
가. 시설포사
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1	20	1,200	중2-134	천호동지구계	천호동298-4번지
변경	"	"	"	"	"	"	가각(±10m)전제

나. 도면 : 강동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

서울시	도시	계획	제	호
09 · 6 · 8				
심	사	제		

				
6 T				
공	공	공	공	공